

●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-0256호

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” 및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제·개정함에 있어,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9월 16일

국가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(4종) 제·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- 가. 기술발전 및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가 출시됨에 따라 관리대상 용량을 확대(200kVA → 500kVA)하여 안전관리 필요(별표 2, 별표 10, 별표 20)
- 나. 관리대상 범위 용어 자구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(별표 1, 별표 2, 별표 9, 별표 10, 별표 20)
- 다.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수준 조정(별표 1, 별표 2, 별표 9, 별표 10, 별표 20)
- 라. 세부품목 통합(별표 1, 별표 20)
- 마.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(별표 1, 별표 9, 별표 12, 별표 20, 별표 28)
- 바. 중복 및 누락 단어(문구) 수정 등을 통한 법령체계 현행화(별표 2, 별표 9, 별표 20, 별지 8호)
- 사.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적용 안전기준 현행화(별표 25)
- 아. 초급속 충전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마련(KC 61851-23, KC 62196-1, KC 62196-3, KC 62196-3-1)

2. 주요 내용

- 가.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(200kVA → 500kVA)
- 나. 제품의 성격이 전원공급인 품목(변압기, 전력변환장치, 전기차충전기 등)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일괄 자구수정(‘정격용량’ → ‘정격출력’)
- 다. 직류전원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의 안전관리수준 완화(안전확인 → 공급자적합성)
- 라. 동종 유사제품인 전기밥솥과 전기보온밥솥 품목 통합(전기보온밥솥 삭제) 및 전기레인지, 전기호브, 핫플레이트 품목 통합(전기호브, 핫플레이트 삭제)
- 마. 법제처의 ‘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’에 따른 자구수정
 - * (예시) 열동식 → 열동식(열을 이용하여 가동하는 방식)
- 바. 현행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단순 오기, 중복 및 누락 등에 대한 별표 양식 수정
- 사.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적용 안전기준의 오기 및 누락 등을 수정
- 아. 초급속 충전기의 전원공급장치, 구조요구사항 등의 시험기준 개정
 - ※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(www.kats.go.kr → 고시·공고)

3. 의견제출

제·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(043-870-5444, inseok0822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(www.kats.go.kr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(우 27737)

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

- 전화 : 043-870-5444 (팩스 : 043-870-5676)

- 이메일 : inseok0822@korea.kr